

동일본 대진재(大震災)와 임시(臨時)재난방송국의 개설

*이연

선문대학교

*leeyeon@sunmoon.ac.kr

The Great Earthquake Disaster in East Japan and Establishment of Temporary Disaster Broadcasting Network

*Lee, Yeon

Sunmoon University

요약

국가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긴급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임시재해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시정촌의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전기나 전화, 휴대폰 등의 연락회선이 두절되어 정보전달 수단이 한정되게 된다. 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도 곤란한 상황에서 재난정보전달체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발생 초기에 임시재난방송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피재지나 피난소에서 얻은 피난정보나 라이프라인정보, 지원물자 배포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본 대진재 시의 임시재난방송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임시재난방송국의 운영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론

국가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긴급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 개설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간단하게 방송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적 자본이나 인력이 적게 들고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라디오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2011년 3·11동일본 대진재 발생 이후 24개 시(市)·정(町)에서 29개의 '임시 방송국'이 개설되어 방송되었다. 가장 빨리 개국한데는 진재 당일에 개국해 급수, 음식물 제공 등의 구조정보, 부흥정보를 FM방송으로 피해자에 전달해 피해경감이나 재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긴급사태발생 시 '긴급재난방송'은 어떤 방송국으로 어떻게 방송하면 보다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재난방송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정촌의 수장을 필두로 방재·홍보·정보담당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법제도·요원확보·유지운영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실제 사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동일본 대진재 당시 임시재난방송국의 활약 사례

동일본 대진재 당시 전화나 스마트폰 등 전화 회선이 두절되어 정보전달 수단이 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전 범위도 광범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이 곤란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충전식 라디오 등이 등장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게 되었다. 비교적 라디오는 수신기만 있으면 중요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수단의 하나로써 활용되어 왔다. 임시재난방송국(FM라디오방송)은 지진발생 당초에는 피재지나 피난소에서 얻은 피난자 명부나 안부정보제공, 라이프라인(전기, 가스, 수도, 전화)정보, 지원물자 배포정보 등을 중심으로 방송하였고, 그 이후에는 급식과 급수, 입욕시설 등의 구원정보, 도로, 점포 등의 재개정보, 가설주택이나 의연금수령 수속 등의 행정기관의 정보도 제공받게 되었다.

임시재난방송국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피해자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피재지의 임시재난방송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임시재난방송국의 설립 배경과 방법, 운영상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임시재난방송국의 개설은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피해도 경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적 방송)은 다음 각 호에 거론된 사항 중에 어느 것인가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최 후원하거나 또는 협찬하는 박람회, 그 외에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제공되는 것.

②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그 외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

(4) 전파법관계심사기준(무선국의 목적별 심사기준)

(5) 방송법관계심사기준(2001년 총무성 훈령 제68호) 별지 1(제3조 관계), 제3조(11)에 의하면 심사는 관계법령, 기간방송보급계획 및 기간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 외에 하기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1~17은 생략).

18. 임시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지상기간방송의 업무의 인정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인정 등 주최로서는 피해지의 지방공공단체 등, 재난대책방송을 하는데 적합한 단체 (!!)방송대상지역은 피해대책에 필요한 지역의 범위 내에 있을 것 (!!!)방송프로그램은 피해지의 피해자의 지원 및 구원활동 등의 원만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것일 것

4. 결론

임시재난방송국은 구두로 면허수속을 하고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FM방송국에 혼신방해를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면허가 나지 않는다. 유한 자원인 전파(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파가 혼선하고 있는 지역에는 면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이해 할 필요가 있다. 2012년 2월 현재 29개국 이 개설 되었으나 10개국 이 폐지되고 현재는 19개 방송국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계속해서 방송을 계속할 의향을 내 비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백령도나 흑산도 등에서 4.9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 반도에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지진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재난발생시 나중 사후 수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임시재난방송국의 개설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선진국형 방재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総務省東北総合通信局「東日本大震災に際し開設された臨時災害放送局の開設状況」, 2013年4月1日.
- (2) 総務省東北総合通信局「臨時災害放送局開設

等の手引きの公表と今後の取組」, 2012年10月23日,

(3) 総務省東北総合通信局「東日本大震災で臨時災害放送局を開設した地方公共団体の経験を踏まえて」, 2012年10月23日.

(4) 日本民間放送連盟研究所「東日本大震災時のメディアの役割に関する総合調査報告書」, 2011年10月.

(5) 総務省「平成23年版情報通信白書」第1部「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情報通信の状況」

(6) 総務省地域放送推進室作成「コミュニティ放送局に関するQ&A (Ver.2)」,

平成23年6月14日版.